##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64 발의연월일: 2020. 12. 17.

발 의 자:정청래·홍성국·오영환

이원택 • 이수진 • 임호선

최혜영 • 김민철 • 주철현

임오경 · 신현영 · 김병주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9조제 1항).

법률 제 호

##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9조제1항 중 "지불"을 "지급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등기 등) ① 시・도지사는	제9조(등기 등) ①
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<u>지불</u> 하	<u>지급</u>
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	
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	
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,	
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	
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